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어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어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“알선 또는 조정”을 “알선, 조정 또는 증거보전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알선, 조정”을 “알선, 조정, 증거보전”으로 한다.

『별표』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 수 료 (제4조 관련)

신청별	조정가액별 수수료
알선신청	10,000원
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
조정절차 참가신청	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
증거보전신청	5,000원
※ 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